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 민간투자사업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

Welcome to the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PIMAC) at the KDI, a gatekeeper to public procurement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projects in Korea!

# 1. 개요

- 민간투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임.
- 우리나라는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운영에 민간투자방식이 도입되었으며,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많은 사업들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여 그동안 추진해 오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뿐만 아니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도 도입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참여 기회도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공공투자관리센터”로 약칭)를 설립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함.(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 2. 대상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1호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나열하고 있는 데 교통시설, 환경시설, 교육시설 등 53개 시설이 해당됨.

- 01 「도로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 02 「철도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 03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 0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 05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 0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 07 「수도법」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 08 「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 09 「하천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 10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 11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12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 13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 14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 15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 2. 대상시설

- 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19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 20 「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 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공원
- 2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 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 26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27 「도서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2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 2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 3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 31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 32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 33 「과학관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 3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 35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 3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교육·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2. 대상시설

- 37 「임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
- 38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39 「노인복지법」제32조·제34조 및 제38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 4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시설
- 41 「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 42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 4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 4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 4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 46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 48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
- 4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제외)
- 5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 5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5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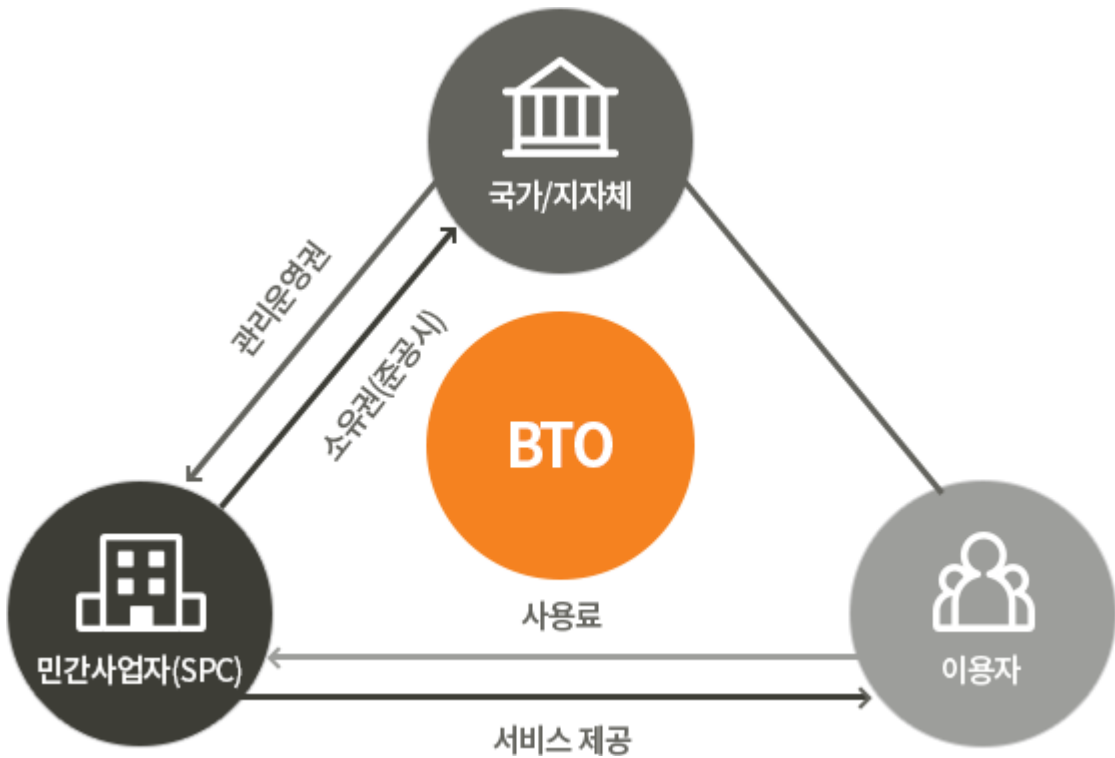
자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6.12.1.] [법률 제14242호, 2016.5.29, 타법개정]

### 3. 추진방식

사업추진 방식은 크게 수익형(BTO, BOT, BOO)과 임대형(BTL) 방식으로 구분

#### ● BTO (Build-Transfer-Ope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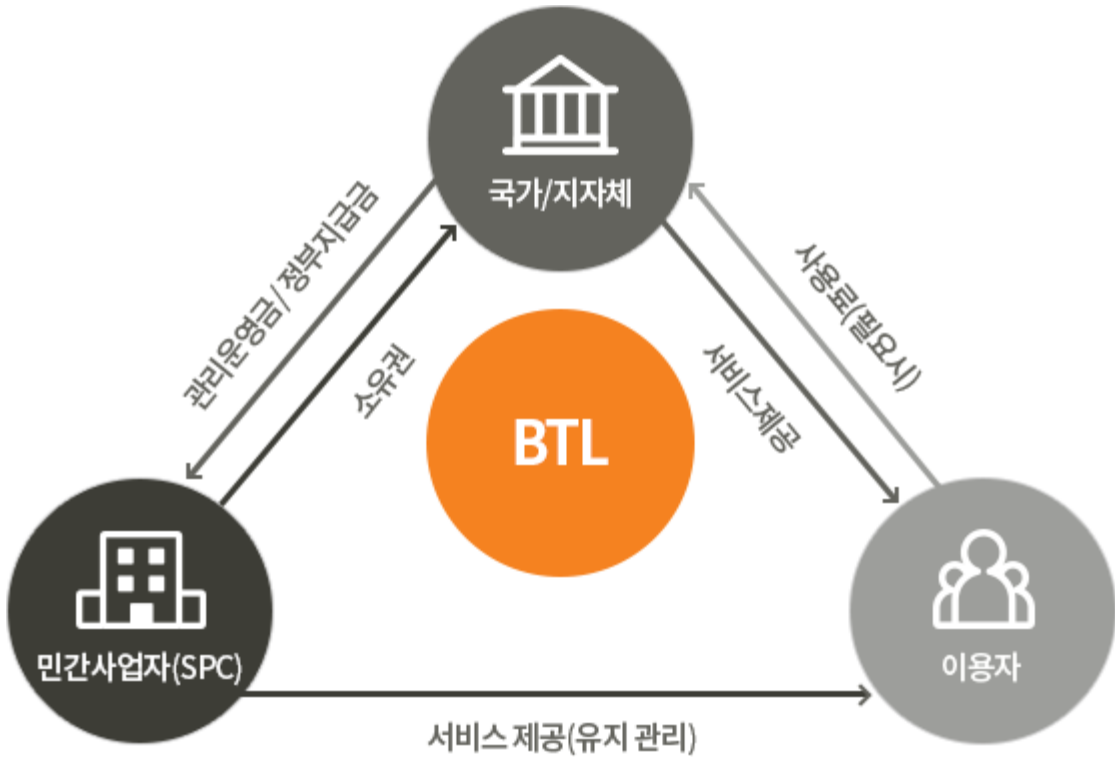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BTO 방식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투자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형태(일반적 BTO 사업)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분담하는 형태(위험분담형 BTO 사업)가 있음.



### 3. 추진방식

#### ● BTL (Build-Transfer-Lease)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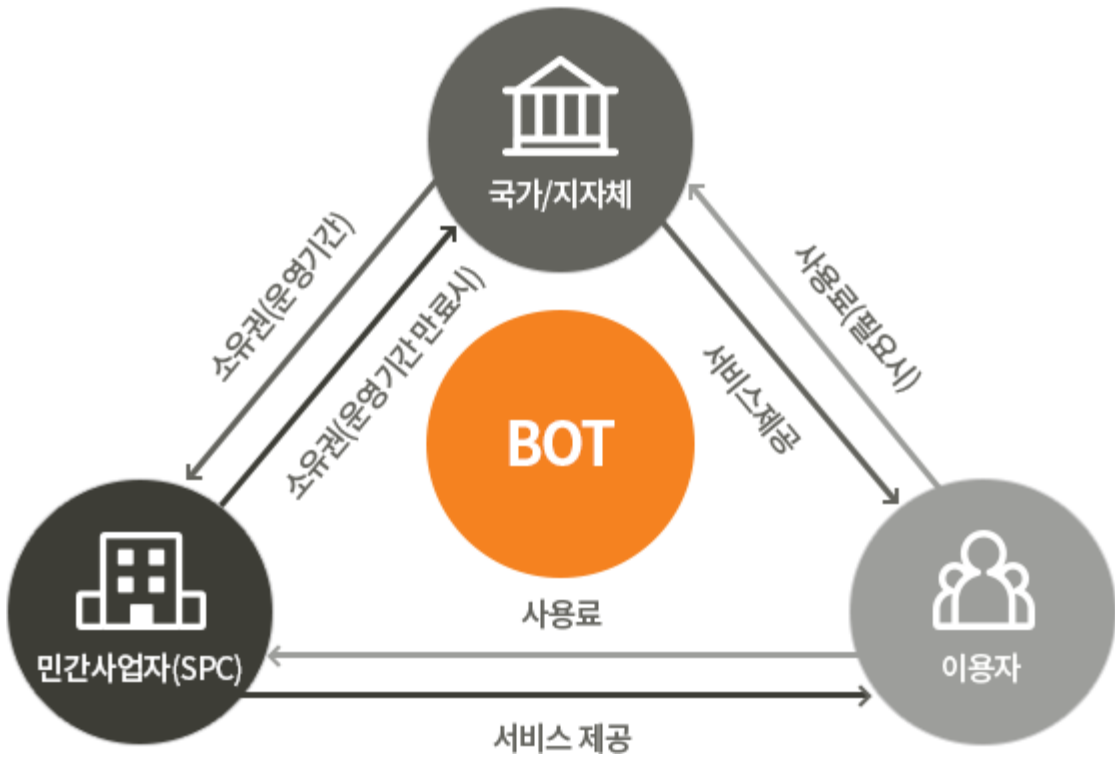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3. 추진방식

#### ● BOT (Build-Operate-Transfer) 방식

-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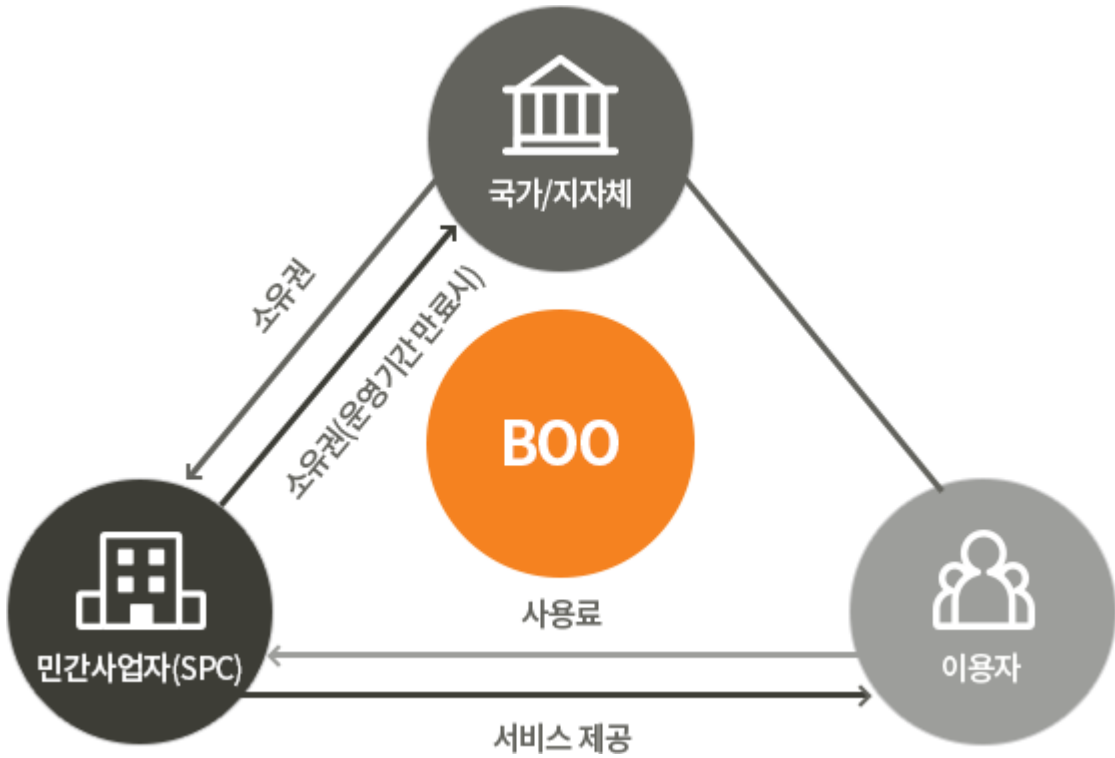




### 3. 추진방식

- BOO (Build-Own-Operate) 방식

• 건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 4. 사업추진 절차

## <일반적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민간	정부	주요내용
	사업계획 수립 (주무관청·주무부처)	투자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주무관청 등)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재정사업 대비 우월성, 추진대안 검토
	대상사업 지정 (주무관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천억원 미만사업은 주무관청이 자체 지정</li> <li>• 2천억원 이상 사업(BTL의 경우는 1천억원 이상)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li> </ul>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고시 (주무관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 조건 및 정부의 지원내용 등 명시</li> <l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사전 검토</li> <li>• 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사업(단,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경우 국고지원이 3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li> <li>• 2천억원이상 사업의 주요사항은 영문요약 고시</li> </ul>
사업계획 제출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운영</li> <li>• PQ 및 2단계분리심사 가능</li> </ul>
	실험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시설사용기간, 사용료 등 사업시행 조건 결정</li> <li>• 실험약(안)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사전 자문</li> <li>• 2천억원 이상 사업 등 심의위원회 심의</li> </ul>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 (주무관청)	3개월 내 심사결과 통보
공사시행	준공 확인 (주무관청)	
운영시행	운영 감독 (주무관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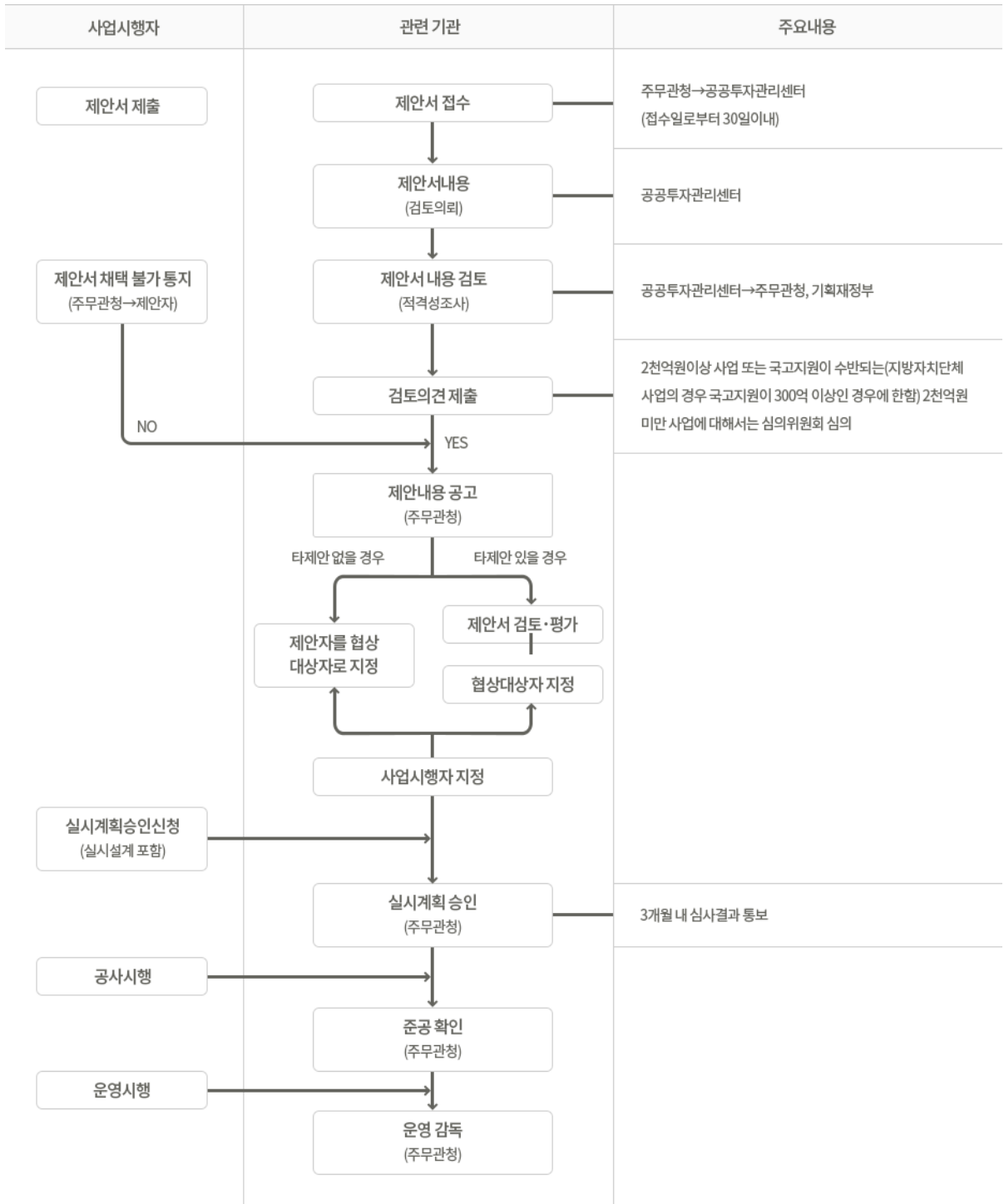
# 4. 사업추진 절차

<BTL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사업시행자	정부	주요내용
	사업계획 수립 (주무관청·주무부처)	대상사업별 투자계획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주무관청 등)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재정사업 대비 우월성, 추진대안 검토
	사업계획 신청 (주무부처)	타당성분석 결과 첨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포함)
	한도액 편성 및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
	국회 의결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주무관청)	시설·운영에 대한 명확한 성과수준 제시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주무관청)	
사업계획서작성·제출		시설의 시공·운영 계획과 요구 사업시행조건을 제출
	사업계획 평가, 협상 대상자 지정 (주무관청)	사업계획 평가, 결과 공개 우선협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주무관청)	세부 사업시행조건 확정
실시계획 승인 신청		공사 시행계획 등 1년 이내 주무관청에 신청
	실시계획 승인 (주무관청)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사항 병행 추진
착공		
	준공 확인 (주무관청)	준공보고서 검토
	운영상황 Monitoring (주무관청)	서비스의 요구수준 충족 여부 점검
	사업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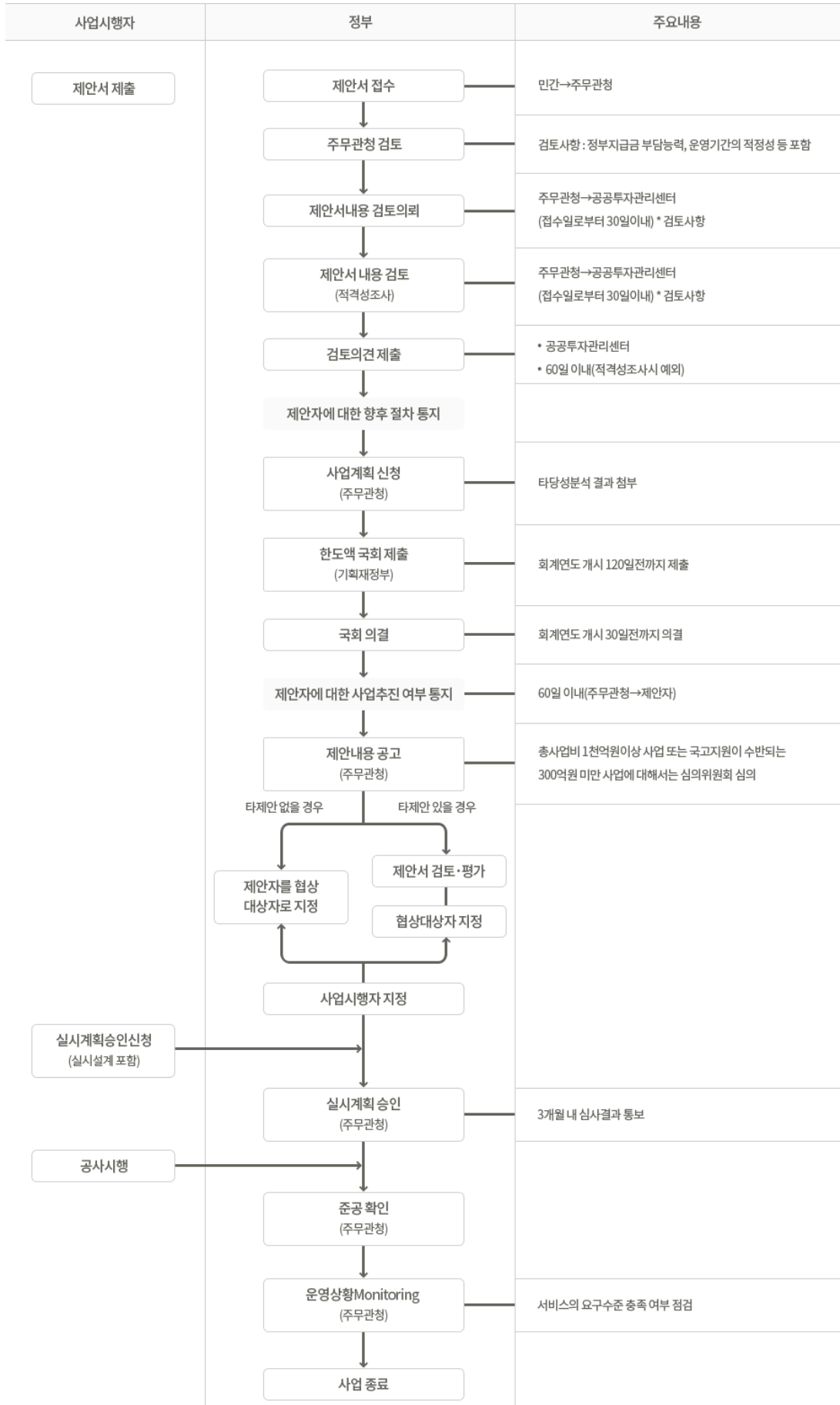
## 4. 사업추진 절차

### <일반적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 4. 사업추진 절차

## <BTL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 5. 추진현황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민간투자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사업 수와 투자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표> 연도 및 추진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연도	사업수	총 투자비	평균 투자비	수익형		임대형	
				사업 수	총투자비	사업 수	총투자비
1995	1	14,602	14,602	1	14,602		
1996	1	1,200	1,200	1	1,200		
1997	15	28,958	1,931	15	28,958		
1998	4	26,730	6,683	4	26,730		
1999	13	7,895	607	13	7,895		
2000	14	52,142	3,724	14	52,142		
2001	15	49,960	3,331	15	49,960		
2002	15	31,706	2,114	15	31,706		
2003	16	50,565	3,160	16	50,565		
2004	19	56,224	2,959	19	56,224		
2005	27	83,226	3,082	18	78,911	9	4,315
2006	79	60,676	768	10	30,692	69	29,985
2007	121	106,268	878	17	44,442	104	61,826
2008	80	95,768	1,197	15	66,239	65	29,529
2009	95	92,024	969	11	37,718	84	54,306
2010	51	75,945	1,489	3	29,344	48	46,601
2011	36	47,153	1,310	12	34,297	24	12,856
2012	31	55,615	1,794	8	39,370	23	16,245
2013	17	32,552	1,915	8	15,040	9	17,512
2014	26	26,210	1,008	8	13,840	18	12,369
2015	17	98,093	5,770	7	32,576	10	65,518
2016	6	8,570	1,428	3	7,586	3	984
<b>합 계</b>	<b>684</b>	<b>1,102,082</b>	<b>1,577</b>	<b>233</b>	<b>750,037</b>	<b>466</b>	<b>352,046</b>

주: 수익형 민자사업에는 BOT와 BOO 방식의 사업이 포함된 수치임.